

의정부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가합5572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수정

피고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구성진

변론 종결2022. 9. 21.

판결 선고2022. 10.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가. E와 피고 주식회사 B(2021. 3. 31. 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52,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15. 6. 2. 체결된 168,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E와 피고 D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52,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 2015. 6. 2. 체결된 168,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E와 피고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8344 매매대금반환 등 사건의 원고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고 D은 위 사건의 피고 중 1명인 E의 아들이며, 피고회사는 피고 D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E와 그 배우자인 G을 각 사내이사로 하여 2012. 4. 2. 설립된 회사이고, H는 2014. 12. 23.부터 2017. 3. 23.까지 피고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취득

1) 망인은 2004. 8. 27. E로부터 포천시 I 임야 39,868m²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한 뒤, 그때부터 2004. 10. 14.까지 E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2) 망인은 2005년경 E 외 6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8344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망인은 관련사건에서 E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의 착오취소에 따른 매매대금의 반환과,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E가 망인을 기망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각 청구하였다.
- 3) 의정부지방법원은 2007. 7. 13. 관련사건에 대하여 'E는 망인에게 3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28.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9. 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15.부터 각 2007.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9. 4.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망인의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 4) 망인은 2009. 6. 8. E 소유의 포천시 I 임야 39,868㎡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J,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 원금 320,000,000원, 이자 167,557,533원을 신고하였고, 3순위 채권자로서 231,550,909원을 배당받았다.
- 5) 망인은 그 이후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부동산 매수

- 1) H는 2011. 2. 3. K으로부터 포천시 L, M, N의 3개 토지(위 3개 토지는 2011. 3. 21. L으로 합병되었고, 합병된 토지의 지목이 2011. 7. 27. '잡종지'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며, 그 중 12㎡ 부분이 2016. 1. 15. O 토지로 분할됨으로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합병·지목변경·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3.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H는 2011. 7.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3) 피고회사는 2015. 5. 20. H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52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20,000,000원은 2015. 6. 1. 지불, 잔금 100,000,000원은 2015. 6. 2. 지불)에 매수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6.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8,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1) E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H에게 그 소유명의만을 신탁해 두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E와 피고회사 또는 피고 D 사이에 2015. 5.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인 52,000,000원, 2015. 6.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일부인 168,000,000원에 관하여 각 현금증여계약이 체결되고, 각 현금이 증여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이하 원고의 주장에 따른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이라 한다)1).

2) E는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 체결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도 체납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은 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E와 피고 D 또는 피고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 D 또는 피고회사의 악의 역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D 또는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증여액 합계 2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설령 E가 피고 D 또는 피고회사에게 주위적 청구와 같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2015. 5. 20.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뒤(이하 원고의 주장에 따른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이라 한다)이에 따라 2015. 6. 2.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증여하였다.

2) E의 무자력,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등은 주위적 청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2015. 5. 20. 당시 매매가격인 520,000,000원에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E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를 피고회사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E와 피고 D 또는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에 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21. 6. 3.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는 날인 2015. 5. 20.로부터 5년이 지나서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 2)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송물은 그 취소 대상으로 삼은 법률행위 및 목적물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등 참조).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E와 피고 D 또는 피고회사 사이에 '2015. 5. 20. 체결된 현금 52,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6. 6. 2. 체결된 현금 7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 대상으로 삼았다가, 2021. 6. 3.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원고는 위 예비적 청구에서 E와 피고회사 사이에 '2015. 5.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증여)계약3)'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하였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당초 청구와 2021. 6. 3.자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그 취소 대상으로 삼은 법률행위 및 목적물이 서로 상이하므로 그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2021. 6. 3.에서야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날짜는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인 2015. 5. 20.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은 그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와 목적물이 동일하나 다만 그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와 목적물이 상이한 본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4)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선

판사김한철

판사두홍륜

별지

1)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E가 피고 D 또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2,000,000원 및 잔금 중 78,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0. 11. 26.자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이후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본문과 같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초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설령 당초의 주장이 선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가 피고 D 또는 피고회사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당초 'E와 피고들 중 1인 사이에 2015. 6. 2. 체결된 78,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와 관련된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 그 법률행위시인 2015. 6. 2.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6. 3.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청구취지를 '위 당사자 사이에 2015.

6. 2. 체결된 168,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와 관련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 중 증거관계의 변동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이 소장에 명백히 표시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증거관계 변경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비록 그 청구금액이 확장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에 관한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다5273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증거관계의 변동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후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본다.

3) 원고는 그 후 2021. 8.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그 법률적 성격을 '증여계약'으로 확정하였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현금증여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와 목적물이 동일하나 다만 그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각주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초 'E가 피고들 중 1명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또는 잔금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현금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5. 5. 20. 및 2015. 6. 2.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1. 26.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므로, 그 변경된 청구원인을 근거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